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문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67

발의연월일: 2020. 9. 17.

발 의 자 : 홍문표 · 성일종 · 한무경

조경태・정운천・이 영

김희곤 · 이양수 · 이 용

권성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·시설·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그러나 현재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 10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응시율에도 불구하 고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자 함(안제21조의7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7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 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7(나무의사 등의 양성기	제21조의7(나무의사 등의 양성기
관 지정 등) ① ~ ③ (생 략)	관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
	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
	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
	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
	력하여야 한다.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과 같음)